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00

발의연월일: 2022. 5. 4.

발 의 자:이병훈·김철민·노웅래

설 훈·송갑석·어기구

오영환 • 이용우 • 전혜숙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지원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 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
	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
	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u>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
	<u>는 사람</u>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 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 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